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0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박정하·진종오·서범수

이종욱 • 조은희 • 김재섭

신성범 · 이인선 · 김용태

신동욱 • 조지연 • 김상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각각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2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 · 신고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정

아

개

-----30일 --

----. 다만, 영업정지 등 행 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